

|                      |             |
|----------------------|-------------|
| 02 4·3유적지 복원·정비 현장방문 | 08 농수축경계위원회 |
| 03 제350회 임시회 개최      | 09 교육위원회    |
| 04 행정자치위원회           | 10 입법정보     |
| 05 보건복지안전위원회         | 12 사무처 소식 / |
| 06 환경도시위원회           | 청탁금지법 Q & A |
| 07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             |

# 제주 의정 소식

## Dreamjeju 21

발행 제주특별자치도의회 | 발행일 2017. 4 |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1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 전화 064-741-2235 | 팩스 064-741-2219 | <http://www.council.jeu.kr>



## 제69주년 4·3 희생자 추념식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4·3의 비극과 아픔을 화해와 상생의 새로운 역사로 만들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계신 유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 “4·3 과제 완전 해결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4·3희생자 유가족 여러분!**  
지난해처럼 봄은 어김없이 우리들 곁으로 찾아왔습니다.  
제주바다를 일렁이는 파도 역시 밀려갔다가도 다시 돌아옵니다.  
하지만 4·3으로 인해 한 번 떠난 우리 부모형제들은 다시 돌아올 줄 모릅니다. 창졸시간(倉卒之間) 유명을 달리하신 영령들께 머리 숙여 옷깃을 여밉니다. 설령 살아났다고 하더라도 지난 세월 온갖 슬픔을 겪으면서도 깨끗하게 견디어 오신 분들에게 한없는 존엄의 심정을 표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 도의회는 지방의회가 30년 만에 부활되던 지난 제4대 의회 당시부터 4·3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해 온 바 있습니다. 이는 참혹한 역사의 진실은 밝혀져야 하고, 다시는 이 같은 역사를 후세에게 부채로 떠넘겨서는 안 된다는 대의기관으로서의 역사적 소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공식기관에서는 처음으로 희생자 신고접수에 나섰고,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특별법을 제정하도록 청원, 건의 등의 의정활동을 펼침으로써 4·3문제해결의 밑돌을 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4·3특별법이 제정되고 이를 토대로 희생자 조사 및 <4·3사건진상조사보고서>가 채택되었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공식 사과가 이뤄졌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4·3평화공원 조성, 4·3평화재단 설립, 4·3희생자 추념일 지정 등 오늘날 4·3해결의 많은 진전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것이 해결된 것이 아닙니다. 아직도 넘어야 할 해결의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더욱이 내년이면 4·3이 발발한 지 70주년을 맞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우리 도의회에서는 미진한 4·3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해 4·3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대장정에 나섰습니다. 이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일들을 하나씩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첫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활동 백서를 발간하겠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란 없다'고 하였습니다. 오욕의 역사든, 자랑스러운 역사든 가감 없이 기록함으로써 교훈으로 삼고자 합니다. 더욱이 제주사회의 오랜 현안에 어떻게 대처해왔는지 대의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되돌아보는 지침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4·3희생자 및 유족의 배·보상 문제를 추진하겠습니다.**  
이미 도의회 차원에서는 전체 의원총회를 통해 이 문제에 대해 제 19대 대선 제주지역 정책공약으로 적극 주장하여 관철시킨 바 있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선거 이후에도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특별법 제정 내지 개정을 적극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4·3희생자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을 추진하겠습니다.**  
4월 3일이 '4·3희생자추념일'로 지정되었지만, 범도민적 추념행사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지방공휴일 지정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제도적인 검토와 외국의 사례들을 면밀히 살펴보면서 추진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4·3 제70주년 관련예산 등 국가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희생자 유해발굴사업, 생활지원금이나 의료비 등 유족 복지사업에 국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내년의 4·3발발 제70주년을 맞는 다양한 행사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4·3 희생자 신고 상설화 제도를 조속히 마련하겠습니다.**  
이런 과제들을 구체적으로 실현시키기 위해서 우리 도의회는 4월 4일 열리는 제350회 임시회에서 '제주4·3사건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배·보상 및 신고 상설화 조속 마련'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그리고 정부와 국회, 그리고 대선주자들을 직접 방문하여 우리의 결의와 요구를 전달할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4·3문제해결을 위해 조속한 조치가 요구되거나 현안사항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챙겨 나가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서로의 반목과 갈등을 화합과 상생으로 승화하는 일입니다. 그럼으로써 제주가 '세계평화의 섬'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힘을 모아나갈 수 있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사라질 위기 처한 4·3 유적지 보존사업 시급”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 특위, 현장방문서 강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 특별위원회(위원장 손유원 의원)가 3월 29일 4·3유적지 복원·정비 현장을 방문해 유적지 현황을 점검하고 조속한 복원·정비 사업의 필요성을 논의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 특위는 이날 제주시 건입동 옛 주정공장터(수용소)와 화북동 곤을동(잃어버린 마을), 조천읍 선흘리 낙선동성(성터), 목시물굴(은신처 및 학살터), 구좌읍 세화리 다랑쉬굴(은신처 및 학살터) 등을 방문했다.

현장 방문에서 위원들은 4·3 유적지가 크게 훼손되고 있어 복원 및 정비 사업이 시급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손유원 위원장은 “현장을 방문해 보니 이대로 놔두서는 안 된다는 점이 보다 분명해졌고, 정비사업이 시급하다.”며, “사라질 위기에 처한 4·3 유적지를 보존해 역사교육의 장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4·3 특위는 이와 함께 4·3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배·보상 문제와 4·3 추념일 공휴일 지정, 유족 신고 상설화, 유해발굴 사업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대선 공약에 제주 4·3을 해결하기 위한 각종 현안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제주도와 공조 체계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목시물굴(은신처 및 학살터)

## 제69주년 4·3 추념일 기념 공동 기자회견



제69주년 4·3 추념일을 기념하는 공동기자회견이 3월 21일 제주특별자치도청 기자실에서 열렸다.

추념일을 앞두고 제주도와 제주도의회, 제주도교육청, 4·3단체와 시민사회가 한목소리로 4·3의 남은 과제 해결을 촉구했다.

특히 정부와 국회에 4·3 희생자 배·보상, 수형인에 대한 명예회복, 행방불명인 유해발굴 등을 공식 요구했다.

이날 신관홍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은 “4·3 69주년을 앞두고 남은 과제 해결과 제주 미래에 책임 있는 기관과 단체장들이 함께 한자리에 모였다”며 “의회는 4·3 특별위원회 운영을 통해 4·3의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를 준비하고 있으며, 교육청은 4·3 평화 인권 교육주관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관홍 의장은 “4·3 관련 단체들은 60여 단체가 참여하는 제주 4·3 70주년 기념사업회를 구성하고, 4·3의 가치와 의미를 도민과 국민에게 전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있다.”며 “제주 4·3 70주년 범국민위원회도 조만간 구성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 4·3 희생자 및 유족 배·보상 촉구 결의안 채택

4·3 69주년을 앞두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회(위원장 손유원 의원)는 3월 30일 제4차 회의를 개최하고 「제주4·3사건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배·보상 및 신고 상설화 조속 마련」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촉구 결의안에 의하면 “제주도의 최대 비극 4·3문제의 해결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국가적 해결과제임”을 전제하는 한편, “4·3희생자들은 국가 공권력에 의해 억울하게 희생됐음이 밝혀졌고, 정부는 이를 인정하여 대통령이 직접 희생자와 유족 그리고 도민에게 사과” 하는 등 4·3의 완전 해결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내다봤다.

하지만 유독 “정부는 4·3해결에 반드시 필요한 4·3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배·보상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손을 놓고 있어, 이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하면서 4·3사건특별법의 개정

이나 <4·3사건배·보상특별법>의 제정을 대안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더욱이 4·3을 겪은 지 70년 가까운 세월이 흐르다보니 희생자와 유족들이 고령인 점을 감안할 때 서둘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현재 만료된 신고 기간을 단순히 연장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4·3희생자 및 유족이 언제나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신고 상설화 제도 마련’을 촉구하기도 했다.

한편, 이번 채택된 촉구 결의안은 오는 4월 4일 제350회 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전체 의원 명의로 채택되면 행정자치부와 국회의 원내교섭단체 대표, 19대 대선 후보자 캠프 등에 적절한 방법으로 전달할 방침이다.

## 4·3 희생자 추모, 학생 그림 전시회 개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청사에 제주 학생들이 가슴으로 그린 4·3 그림 30여 점이 전시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신관홍)는 도의회 신·구청사를 잇는 통로에 전시공간을 마련하고 첫 전시로 ‘4·3 희생자 추모, 학생 그림 전시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에 전시되는 학생들의 그림은 제주4·3평화재단에서 제공한 학생 4·3 문예백일장 수상작품으로 제주의 미래를 짊어질 학생들의 생각이 잘 표현되어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전시는 4월 30일까지 계속된다.





## 신관홍 의장, “도민 우선 원칙’ 속에 답이 있다” 제350회 도의회 임시회 개회, 도정 및 교육행정질문 열려



제35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가 4월 4일 오후 2시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1일 간의 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원희룡 도지사와 이석문 교육감을 출석시킨 가운데 도정과 교육행정질문을 벌이며, 조례안과 동의안 등 80건의 안건이 처리될 예정이다.

처리가 예상되는 안건을 종류별로 보면 조례안이 16건, 동의안 61건, 기금안 1건, 청원 2건 등이다.

일정별로 보면 4월 4일 제1차 본회의, 5일부터 7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별 안건심사, 10일부터 12일까지는 2, 3, 4차 본회의를 열어 원희룡 도지사를 출석시킨 가운데 도정질문을, 13일에는 제5차 본회의를 열어 이석문 교육감을 상대로 교육행정질문을 벌인다.

신관홍 의장은 개회사에서 “도정과 교육행정질문을 통해 다시 한 번 제주현안을 돌아보고 ‘도민 우선 원칙’의 관점에서 대안과 정책을 제시해 달라.”고 주문했다.

신 의장은 이어 “69년 전 4월, 무자년 봄에 시작되었던 4·3의 비극도 시공을 초월하여 화해와 상생, 평화의 역사로 새롭게 기록되고 있듯이, 정유년 4월, 우리도 제주의 새 역사를 쓰겠다는 각오로 제350회 임시회를 갖는다.”며, “그 어느 때보다 책임감이 무겁다는 것을 느낀다.”며 임시회에 임하는 심정을 전했다.

신 의장은 또 “오늘 ‘제주4·3사건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배보상 및 신고 상설화 조속 마련 촉구 결의안’도 채택할 예정”이라며 “봄을 여는 생명력처럼 4·3도 아픔을 딛고 새로운 희망의 역사를 써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사드 배치에 대한 보복으로 제주를 찾는 중국인관광객이 80% 이상 급감하고, 관광업계도 큰 타격을 입고 있다.”고 말한 신 의장은 “저도 지난 3월 29일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열린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 참석해서 사드 사태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관광업계의 상황을 설명하고 전국 시·도의회 차원의 협력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 교육현안 해결 위한 도의회 - 도교육청 정책협의회 개최 “교육현안도 소통하며 고민 나누면 좋은 결실 얻을 것”

교육현안 해결을 위한 도의회와 도교육청 간 첫 정책협의회가 열렸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신관홍)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이석문)은 3월 30일 오전 11시 도교육청 대회의실에서 제주교육의 미래와 교육발전을 위해 교육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지난 2월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정책협약에 관한 조례’ 제정 이후 처음 개최되는 자리다.

이번 정책협의회는 주요 의제는 등굣길 1km 걷기 추진계획, 친환경 급식 식재료 안정적 공급 확대 방안, 마을만들기 사업 연계 원도심학교 지원 인프라 확충,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노동인권보호 및 증진 조례 등 4가지로 협의의 안건에 대해 공동 해결방안 등을 모색했다.

이날 정책협의회에는 도의회에서 신관홍 의장을 비롯하여 김항국, 윤준광 부의장, 7개 상임위원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교섭단체 대표 등이 참석했고, 교육청에서는 이석문 교육감을 비롯한 이계영 부교육감, 정책기획실장, 교육국장, 행정국장, 제주도·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참석했다.

전국에서 도의회와 교육청이 교육발전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 정기적 교육정책협의회를 갖는 것은 제주가 유일하다.

신관홍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봄은 희망이며, 생명의 계절이듯이, 대한민국과 우리 제주, 그리고 제주교육에도 봄이 전하는 희망과 생명력으로 넘쳐 났으면 좋겠다.”고 말하면서 “이번 정책협의회가 그 다리가 되었으면 한다.”며 기대감을 표출했다.



## 교통문화지수 전국 최하위 오명 벗어나려면 어떻게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안전 대토론회 개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 문화 확산과 대중교통체계 개편에 따른 주요 내용을 점검하는 교통안전 대토론회가 열렸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3월 30일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신관홍 의장, 김방훈 정부부지사, 이상정 제주지방경찰청장을 비롯 도의원과 관련 공무원, 시민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안전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제주지역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큰 폭으로 증가함에 따라 교통사고 원인 분석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방안을 집중적으로 제기하고, 또한 최근 급격한 차량 증가로 인해 교통난 문제가 심각함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 제주형 교통정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취지에서 기획됐다.

모두 3개의 주제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된 대토론회의 제1주제는 도로교통공단 제주특별자치도지부가 맡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기관 및 단체의 역할에 대해 발표했고, 제2주제는 제주지방경찰청이 제주도 교통사고 특성분석 및 예방 대책에 대해, 제3주제는 도 교통관광기획단에서 제주형 교통정책에 대해 각각 발표했다.

주요 발표내용을 보면 교통사고 예방에 따른 행정기관 및 단체의 역할에서는 교통약자의 안전을 최우선 확보할 수 있도록 도로시설 및 교통안전시설의 필요성에 대해서 발표했고, 교통사고 예방에 따른 행정시, 지방경찰청, 교육청, 시민단체의 역할을 모색, 그리고 최근 3년간 도내 교통사고 발생에 따른 렌터카 교통사고 현황 등도 분석해서 발표했다.

또 8월 1일부터 시행되는 대중교통체계 개편에 따른 주요 개편 내용을 발표했다. 주요 개편 내용으로 버스요금체계 단일화, 노선 개편, 대중교통우선차로제 도입, 급행버스 신설, 환승센터 및 환승정류장 도입, 버스 증차 등의 내용도 밝혔다.



## 행정자치위원회

##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갈등 해소방안 보고받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고충홍 의원)는 3월 13일 제349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어 제주도로부터 민군복합형관광미항 등 갈등 해소방안 추진상황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 의원들은 해군의 강정마을 구상금 청구와 줌월드 배치, 공군의 남부탐색 구조부대 창설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특히 미군의 줌월드 배치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제주 민군복합항이 해군기지 역할에 치우칠 것이란 우려가 도민 사회에 퍼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방부는 제2 공항에 남부탐색구조부대 배치

계획을 세웠다면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된 제주의 이미지와 역행하는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제2 공항 부지 내 공군 시설 설치 여부는 전혀 검토·논의된 바 없다는 국토교통부의 입장과 달리 공군 관계자들은 최근 제주를 찾아 공군부대 필요성을 말하고 있다며, 이러한 현안에 대해 제주도는 반대 입장을 명확히 표명해 갈등과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며 제주도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했다.

## 도교육비특별회계 도세 전출금 5%로 상향

주요 안건 중 도세 전출금을 3.6%에서 5%로 상향하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전출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를 통해 향후 5년간 약 1천억 원이 추가로 교육청에 전출되며, 앞으로 이주민 증가 등으로 인한 학교 신·증설 수요 등에 투입될 계획이다.

다만, 부대 의견으로 ‘철저한 예산집행’ 및 성과평가에 해당되는 ‘매년 예산집행상황 보고’를 부대조건으로 하여 계획적이고 투명하게 재정이 집행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제주도로부터 ‘제주도 권역별 균형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 추진 상황’을 보고받았다. 용역팀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동권역, 제주시 서부(애월·한림·한경)와 서귀포시 서부권역(대정·안덕), 제주시 동부(조천·구좌)와 서귀포시 동부권역(성산·표선·남원)을 구분해 생애주기 및 분야별 지역균형발전 수준을 분석하고 예시사업을 제시하였다. 위원회에서는 지역 격차의 원인을 인간자원, 산업·경제적 투자 차이, 민간 서비스 공급 차이로 분석해 놓고 대책은 민간 서비스에만 맞춰져 있다면, 산업경제분야 사업으로 농기계 임대 사업만 거론하고 있는데 무슨 의미가 있는냐고 지적했다. 또한, 지표가 전체적으로 세밀하게 짜여야 하는데 단편적이라며, 학교와 주거정책, 먹고 사는 부분에 대한 산업적 측면 등이 필요한데 이런 부분들이 제외됐다며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

## 체계적인 갈등관리, 권익증진 시스템 구축된다

제주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체계적인 갈등관리 및 권익증진 시스템 구축이 추진된다. 행정자치위원회는 3월 21일 의사당 소회의실에서 「갈등관리·권익증진 체계구축을 위한 사회협약위원회 기능 및 위상 강화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2002년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정으로 제주의 비전이 제주국제자유도시로 설정된 이후 각종 갈등으로 공공정책뿐만 아니라 민간투자 개발 사업이 좌초되거나 지연되는 사례가 많았다.

고충홍 행정자치위원장은 “국제자유도시 투자유치, 각종 특례 등 제도의 차별적 적용을 바탕으로 개방정책을 지향하기 때문에 갈등이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각종 갈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도민사회통합과 지역발전에 기여하게 하는 긍정적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토론회의 취지를 설명했다.

사회협약위원회 조례의 전면개정을 준비하고 있는 박원철 행정자치위원회 의원은 “도민 사회의 압도적 지지를 받은 원희룡 도정도 갈등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과거와 같이 주요 정책들이 잇따라 브레이크가 걸리고 있다”며 현재의 갈등관리 시스템을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피력했다.

박원철 의원은 “현재의 갈등관리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제주특별법상의 사회협약위원회의 법적 위상과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필수이기 때문에, 의회와 집행부가 이견이 있을 수 없다”며, 이미 6단계 제도개선과제에 의회가 제안하여 사회협약위원회에 사무국을 둘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의회와 집행부 실무진들이 함께 행정자치부와 협의 중에 있음을 강조했다.



## 도내 시민사회단체 공익활동 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간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경식 의원과 이상봉 의원은 3월 27일 도민의방에서 ‘제주특별자치도 NGO지원센터(이하 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개최하고 조례 제정에 따른 도내 시민사회단체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들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센터의 설치를 명문화하고 센터의 주요 기능으로 ▲관련 정책 개선활동 및 사업의 제안 ▲회의·교육 등 기반시설 및 편의시설 지원 ▲NGO의 창립 등 상담지원 ▲NGO 구성원의 소양교육 실시 ▲NGO 네트워크·협력사업 등 교류협력체계 구축 등을 규정하고, 센터의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기구로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

강 의원은 “공익활동의 경험과 자원을 공유하고 도내 시민사회단체들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서 센터의 설립은 시급히 추진돼야 할 과제”라며, “의회 차원에서도 시민 공익활동을 더욱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상봉 의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도정과의 원만한 협의를 통해 조례제정을 추진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 지원 조례안 수정 가결

보건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김용범 의원)는 제349회 임시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를 열어 '제주특별자치도 제주 항일기념관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류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 항일기념관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심사 보류된 이유는 항일기념관이 1997년 개관하여 올해 20년이 되었음에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의한 공공 박물관으로 등록하지 않아 운영에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공공박물관으로 등록 후 전부개정 조례를 심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그동안 공공박물관 미등록으로 인해 감사위원회에서 수장고 자료 및 전시실 관리 부적정, 항일자료 수집계획 심의절차 미이행 등 자료수집 업무처리 부적정 등의 문제를 지적받는 등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 실정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익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로 장애 청소년이 학교생활에서 사회생활로 전환하는 시기에 취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장애 청소년 직업지도센터를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을 두어 장애 청소년의 사회적응 및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정되었다.



## 대천환승센터 예정부지 현장 방문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제349회 임시회 기간 중인 3월 14일 현장방문을 실시했다.

대중교통체계 개편 시행에 따라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교통수단 간 연계체계 구축을 위해 제주도는 대천과 동광 2곳에 대규모 환승센터를 건설할 계획에 있음에 따라 위원회에서는 대천환승센터 예정부지를 방문하여 환승센터 추진과 관련하여 향후 추진계획 등을 점검했다.

또한, 중앙우선차로제 시행구간인 제주시청에서 제주여고 구간에 대하여 현장 방문하여 올해 8월 대중교통체계개편 전면시행 시 도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다.

환승센터조성 사업 및 대중교통 우선차로제 실시에 따른 도민 편의 및 예측되는 불편 사항 등에 대해서는 향후 상임위원회 회의 및 토론회 등을 통해서 깊은 논의를 할 예정이다.

## ‘고령 제주’ 대비 정책 개발 위한 벤치마킹

보건복지안전위원회에서는 ‘고령 제주’에 대비한 노인 일자리 및 여가문화 정책 개발을 위해 3월 16일부터 이틀 동안 서울50플러스재단, 경기도 화성시 종합복지타운을 방문했다.

16일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복합복지타운인 나래울 화성시 종합복지타운을 방문, 복지타운 운영프로그램과 관련한 간담회를 실시했고, 17일에는 서울50플러스재단을 방문해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지원상황과 추진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 현황을 청취했다.

김용범 위원장은 “올해 경로당 간식비가 1,300원에서 2,000원으로 증액되었고, 탐나는 5060 프로젝트도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를 대비해서 시작되지만, 이 정도 정책변화로 미래의 인구변화를 감당해내기 어렵다고 생각한다.”며, “노인 인구가 증가하는 만큼 노인들의 일자리, 여가문화, 노후대책 등 생활 전반에 걸친 정책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앞서 좋은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타시도의 벤치마킹을 통해서 우리 도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강구해보고자 한다.”며 앞으로의 추진방향을 밝혔다.



## 여성 건강권 확보를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통계로 보는 제주의 재생산건강 현주소' 등을 주제로 발표했다.

제2 주제 발표는 제주여성인권연대 고명희 대표가 '생리대 정책마련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생리대 정책에 대한 제주도 여성 283명의 욕구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발표했다.

설문조사 주요 결과를 보면, 학교나 직장 등에서 생리대를 제공 받은 경험에 대해 전체 응답자 283명 중 46명(16.2%)만이 '그렇다'고 응답한 반면, 생리대 미준비로 인해 곤란함을 경험한 적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222명(78.4%)으로 유사시 여성들의 생리대 접근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중화장실 생리대 자판기 설치'와 관련하여 91.5%(259명)가 필요하다고 응답해 비상시 생리대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대안에 대부분의 여성이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중화장실에 생리대 자판기를 설치할 경우 개당 판매금액에 대한 설문 결과는 100원, 200원, 무료, 300원 순으로 나타났다.

토론회를 주관한 강익자 의원은 “오늘 토론회에서 제주 여성의 재생산 건강의 문제, 생리대 접근의 문제 등 다양한 의견이 제안되었다.”며, “무엇보다도 오늘 발제자, 토론자들의 일관된 주장은 여성의 건강권은 '복지'의 차원이 아닌 '권리', '인권'의 차원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에 공감되는 장이었다. 오늘 제안된 내용을 중심으로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의회에서 열심히 활동하겠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가 주최하고 강익자 의원실이 주관한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 '여성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3월 9일 대회의실에서 여성단체 회원, 보건 관련 관계자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주제발제를 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동식 연구위원은 '여성의 재생산 건강권, 이대로 괜찮은가?'에 대해 '재생산 건강권의 개념, 여성의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가이드라인 소개,



## 환경도시위원회

##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결

### 환경 분야, 도민 생활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 마련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사실 지하수 관정의 설치를 제한하여 중산간 지역으로 확산되는 지하수의 오염 문제를 차단하기 위한 규제가 다수 포함되어 있었던 반면, 도민의 편에서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부분은 적어 이번 안건심사에서 자연적 원인 등 도민의 의도가 아닌 불가항력적인 원인으로 지하수 관정을 부득이 폐지해야 하는 부분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을 삽입했다.

도내에 주요 환경자산 중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람사르 습지의 효율적 관리체계 마련을 위하여 현우범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람사르 습지 등 습지 보전 및 관리 조례안」을 심사하여 의결함으로써 람사르 습지와 지역주민과의 유대 관계를 강화하여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주민 관심을 극대화하여 주민참여형 환경자산 관리 체계를 만들었다.

또한, 지역 사회 관심이 지대했던 '다려석산 토석채취 사업'을 비롯한 애월지역 관광 인프라 구축의 한 축을 담당하게 될 '애월 스마트 테마파크 조성사업', 상대적으로 개발이 더딘 조천읍

대흘리 지역 인구 유입 시발점이 될 '대흘 골드 테라스타운 조성사업', 제주시 동부지역 상권 활성화의 중심점이 될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등 총 4건의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을 처리하면서, 주변 지역으로의 환경오염물질 확산 방지, 주민과의 상생방안 마련 등을 주문하고, 다려석산 사업의 경우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야생식물을 보존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화북 상업지역 사업 추진으로 인한 원주민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부대 의견을 제시했다.

이 밖에도,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사장이 공백인 상황에서 실질적인 사업 확대 등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사장 임명 후 심사하기 위해 지난 제348회 임시회 심사보류에 이어 이번에도 상정이 보류되고, 지하수 자원 특별관리구역 변경 동의안 역시 중산간 이상 지역에서의 사실 지하수 관정 허가가 제한되는 부분을 심도 있게 고민하기 위해 상정 보류 되었다.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 및 도시재생 계획 심사



지난해 제출되었던 도시계획조례가 난개발 방지와 재산권 침해라는 과도한 규제나에 대한 논의를 거듭한 끝에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이 수정 가결됐다.

지난 2월 임시회에서 3시간이 넘는 논의 끝에 의결 보류한 것과 달리 이번에는 사전에 집행부와 협의한 수정안을 마련했으며, 이에 대한 의회와 집행부 간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별다른 무리 없이 처리됐다.

또한, 동지역 도로기준에 대하여는 강화된 반면 읍면지역은 현행안을 유지하는 것으로, 하수도 연결에 대해서는 도 전역이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연결하는 것을 전제로 일부 예외규정을 두는 내용으로 수정됐다.

제주시 원도심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 계획안에 대하여는 지난 2월 주민의 의견수렴 미비로 심사보류했으나, 이번에는 논의를 거쳐 수정의견을 달아 의견 제시했다.

원도심 전략계획은 주민들이 직접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공부문이 검토·수용하고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중요하고, 활성화지역 선도 사업 외에도, 지역사회에서 언제든 재생계획을 수립하여 제안할 수 있는 시스템, 그리고 이를 검토하고 지구단위계획 등 법적 계획에 반영하거나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 등 상시적으로 열린 도시재생시스템을 다각적으로 구체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주민 의견과 합의된 사항에 대해 반영하고 지역주민의 참여보장과 사업 진행 시 지역주민과의 협의를 통해 할 것을 주문했다.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사장 인사청문회 실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내정한 오경수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사장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3월 31일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오경수 개발공사 사장 예정자는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몇 년 사이 압도적 1위였던 삼다수의 지위가 점점 위협받고 있다.”며, “대한민국 대표 생수로 입지를 굳힌 제주삼다수의 제2도약을 위해 신규 생산설비를 증설하겠다.”고 밝혔다.

삼다수 수출전략에 대해서도 “삼다수 수출은 아직도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수출량은 미미하고, 브랜드 인지도도 낮다.”고 진단하며, “삼다수의 글로벌 진출을 위해 프리미엄 시장을 타겟팅해 수출전략을 수립하겠다”며 “유망 수출 국가를 선정하고, 현재 핵심 유통 파트너를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환경도시위원회는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후 내정자에 대해 “제주개발공사의 경영 개선과 조직 혁신, 삼다수 사업 영역의 확대 등 현안을 해결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하며, “적격 결론”을 내렸다.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 사드 배치로 인한 제주관광산업 현안보고 시행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위원장 김희현 의원)는 제349회 임시회에서 제주특별자치도립미술관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와 동의안 1건, 민간위탁 사무보고 12건을 처리하는 한편 '중국 관광객 한국관광 금지에 따른 현안 보고'를 받았다.

현안 보고 당시 김희현 위원장을 비롯한 모든 의원은 정부의 사드 배치로 인한 중국 관광객 한국관광 금지 조치에 대하여 도내 관광업계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제주관광 피해 상황 및 대책을 주문했다.

제주는 2010년 이후 중국 관광객이 급격히 증가하여 2016년 기준 제주도내 외래 관광객 중 85%를 중국 관광객이 차지하고 있다. 또한 제주는 무비자 지역이면서 중국과 항공자유화협정이 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제주공항 내 중국 항공사 여객점유율이 86%이다. 그러기 때문에 중국 관광객의 감소는 바로 지역관광업계로 연계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업종으로는 전세버스 업계와 여행사, 호텔업 등으로 의원들은 이에 대한 피해 현황 파악과 더불어 위기 극복대책을 요구했다.

의원들은 또한 중국 관광객이 빠져나간 자리를 대신할만한 시장 다변화 정책을 요구했으며, 관광진흥기금을 통한 지원방안 등 대책 마련과 함께 이번 기회에 질적 관광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기도 했다.



## 갈 길 먼 섬 문화 축제, 방향을 묻는 시간을 갖다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에서는 3월 13일 의사당 소회의실에서 '세계 섬 문화축제 정책 의견 수렴 간담회'를 개최했다.

지난해 8월 도정에서 하반기 문화정책의 하나로 세계 섬 문화축제 추진을 발표함에 따라 이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1998년과 2001년에 개최되었던 섬 문화축제는 각 124억 원과 9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으나, 관광객 유입 효과 실패는 물론 일회성 공연 위주의 행사로 제주의 독창적인 이미지를 살리는 데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았었다. 또한, 2012년에 개최한 탐라대전 역시 25억 원이란 혈세를 낭비했다는 평가를 받은 상태에서 다시 세계 섬 문화축제를 개최하겠다는 정책 발표에 대해 신중성을 기하기 위해서다.

이날 전문패널로 참석하였던 양은희 교수를 비롯한 이용탁 JIBS국장, 박현 더퍼스트원 사업총괄부장, 양성혁 씨포스트제주대표, 신동일 제주발전연구원 연구위원, 김석윤 도 축제육성위원회 위원은 한결같이 과거 세계 섬 문화축제의 초라한 결과를 망각하지 말고, 섬 문화축제의 시의성과 공공성, 타당성을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연대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면서, 실현 가능성과 킬리콘텐츠의 확보에 대한 담보가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양은희 교수는 문화 투자의 원칙과 경제적 측면이 고려된 문화행사만이 공감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 항상 보편타당성이 중요함을 제시했다.

## 제주 문화 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대한 제도화 방안은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에서는 3월 15일 의사당 소회의실에서 '제주특별자치도 문화 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전문가 포럼'을 개최했다.

주제발표자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류정아 박사는 "제주의 현안을 넣은 문화 다양성의 개념을 정립하고 조례 등 제도화가 시급하다."며, "문화 다양성 정책의 의미와 중요성"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토론회를 주관한 김희현 위원장은 "현재 국제자유도시 제주에서 많은 인구유입과 더불어 나타난 다양한 문화의 유입은 제주라는 지역공동체에서 고유의 문화와 대립할 수밖에 없다."고 밝히며, "이에 각각의 문화를 서로 존중하며 융화시킬 수 있는 문화 다양성에 대한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며 제도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 시민복지타운에 어떤 정책이 반영되어야 하는가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에서는 3월 14일 대회의실에서 '시민복지타운조성이 도시문화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도정의 주거정책의 하나로 등장한 행복주택 건립문제와 관련해 시민복지타운 시청사 부지 활용계획은 제대로 된 주민 의견 청취가 없었기 때문에 결국 찬성 측과 반대 측 주민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신석하 국제대 교수를 좌장으로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시민복지타운에서의 행복주택 건립과 관련하여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었으며, 부족한 부분은 향후 논의의 기회를 가지는 것으로 정리됐다. 이정민 박사의 발표와 함께 강두진 시민복지타운토지구획조정위원장, 이성용 제주발전연구원 연구위원, 송종철 제주주거 복지포럼 대표, 김형훈 미디어제주 편집국장, 강호진 주민자치연대 대표, 김군학 도남동 마을회 수석부회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 농수축경제위원회

## 한·일 어업협정 협상결렬에 따른 제주 어선어업인 지원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 발의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현우범 의원)는 '한일 어업협정 협상결렬에 따른 제주 어선어업인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3월 9일 제349회 제주특별자치도 임시회 본회의에서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현우범 의원)가 발의한 '한·일 어업협정 협상결렬에 따른 제주 어선어업인 지원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이 재석 의원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2016년 한·일 어업협정 협상 결렬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갈치 연승 어업인들이 전통적으로 조업해 오던 일본 EEZ 수역에서 지난해 7월 1일부터 조업하지 못하고 있어 어선어업인들은 선원들의 인건비, 금융부채 부담이 점차 악화되고 있다.

또한 원거리 조업에 따른 사고 발생 등으로 제주 어선어업인들의 부담은 갈수록 심화되어 각종 부채로 인한 도산위기에 처해 있어 적극적인 한·일어업협정 대응과 더불어 현재 피해가 심각한 갈치 연승 어업인들에 대해 정부의 경영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하게 된 것이다.

농수축경제위원회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갈치 조업 어업인 등 제주어민의 간절한 마음을 담아 조업손실 보상 등 정부의 특별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으며, 3월 13일 신관홍 의장은 국회와 해양수산부를 방문하여 채택된 결의안을 정부에 전달했다.

## 농어촌민박 시설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처리



제349회 임시회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민박 시설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건의 조례안과 3건의 민간위탁보고의 건을 심사하였고, 제주 크루즈관광 대책추진 현안 보고를 받았다.

이번에 심사된 주요 안건을 보면,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민박 시설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출한 조례로서 상위법인 농어촌 정비법 개정(2008년 2월) 취지에 맞도록 처분기준 등을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230㎡ 이상 규모의 농어촌민박 시설 매대시 사업권이 승계되지 않도록 바꾸도록 하는 내용이다.

수정안에는 '농어촌민박사업자 지정증서를 교부받아 민박사업에 사용되는 주택에 대해 이후 연면적 증가 없이 당시 신청한 면적을 유지하는 경우에 한정해 주택 연면적 230㎡를 초과할 수 있다'로 수정 가결했다. 수정안을 통해 230㎡ 이상의 농어촌민박 309곳(제주시 135, 서귀포시 174)의 재산권 피해가 우려됐으나 사업권 승계가 가능해졌다.

한편 「제주 크루즈관광 대책 추진」 현안보고에서는 중국 정부의 '사드' 보복 조치로 중국 발 크루즈선 제주기항 취소 사태가 심화되면서 선석 배정 후 일정을 취소한 크루즈 선사들을 상대로 페널티를 부과하는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으며, 기항 취소문제가 단순히 제주도에 미치는 영향이 크루즈 관련만은 아니며 어떤 특정 분야만 피해보상을 해주게 되면 새로운 갈등 요인이 되기 때문에 종합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3월 13일에는 해양수산연구원을 현장방문하여 어선어업 자동화 개발 및 소득증대연구, 양식산업 경쟁력 강화 연구 등 주요연구 사항에 대해 현안보고를 청취하고 친어 사육동 및 양식 시험동 등 연구현장을 확인했다.

현장 방문하는 자리에서 그동안 해양수산 발전에 수고한 연구원들과 직원들의 노고에 대해 격려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앞으로도 더욱 해양수산 발전에 힘써주길 집행부에 주문했다.

## ‘창조경제혁신센터’ 지속가능성 고민하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현우범 의원)는 3월 15일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지속성장 전략 정책토론회'를 열고, 진짜 '창조경제'를 찾아 나섰다.

현재, 창조경제혁신센터는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의 핵심 정책 중 하나로 인식되어 많은 정치적 이슈와 지속가능성 여부에 대해 논란이 지속되고 있으나,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의 경우 지역 단위 '혁신거점'과 '창업 허브'로서 실행거점 역할을 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에 대해 지속가능한 창조경제혁신센터 역할과 방향성을 모색함에 있어 도민·전문가·행정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수 있는 협의의 장을 마련한 것이다.

이날 정책토론회는 제1, 2 주제에 대한 발표에 이어 이경용 의원이 좌장을 맡아 관련 전문가들의 열띤 토론이 전개됐다.

첫 번째 주제발표는 전정환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장이 나서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의 역할과 한계"에 대해 발표하고, 그동안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의 역할과 성과 그리고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를 둘러싼 주요 이슈들에 대해 얘기했다.

두 번째 주제발표는 '창조경제혁신센터 지속성장을 위한 전략과 방향성'에 대해 오세홍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선임연구위원이 발표하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바라본 창조경제혁신센터의 발전적 방향을 제시했다.





교육위원회

## 도교육청 학교급식 정보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

교육위원회(위원장 강성균 교육의원)는 제349회 임시회 동안 조례안 심사와 제주 다문화교육센터를 포함한 2개 기관 현장방문을 실시하여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3월 13일 열린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된 조례는 구성지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학교급식 정보공개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학생과 학부모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하고자 마련됐다.

조례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제주도교육감이 학교급식 정보공개 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으며, 학교급식 정보공개 대상도 학교급식운영계획서, 월간 식단표, 식재료 원산지, 급식비 중 식품비 사용 비율, 학교급식 예산편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 등으로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또 학교장은 학교급식 정보를 제공하고 학생과 학부모가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학교급식 게시판을 운영토록 하여 학교급식의 투명성, 신뢰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제주다문화교육센터 등 현장방문 실시



교육위원회는 임시회 기간 중 제주다문화교육센터를 방문하여 2017년 운영현황 및 현재 추진 중인 교육프로그램과 특색사업 등에 대하여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최근 제주 지역의 다문화 학생 수가 급증함에 따라 다문화학생을 위한 맞춤형 교육, 그리고 일반 학생과 학부모를 위한 다문화 이해 교육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져 가고 있어 이번 현장방문은 그 의미가 크다.

의원들은 도내 전체 학생 대비 다문화학생 비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제주도 내에서 다문화교육센터가 조천읍 1곳에만 설치되어 있어 도내 많은 학생이 이용하기에 접근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거론하였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다문화교육센터를 추가 설립하거나 혹은 학교 현장에서 다문화학생을 위한 교사 배치 및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을 적극 발굴, 홍보하여 다문화교육 저변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의견 및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외국문화학습관 활용 및 도내 민간에서 운영하는 다문화 관련기관과의 교류협력을 하는 방안들이 제시됐다.

또한 중도입국 학생은 국내출생 다문화 가정의 학생에 비해 의사소통, 한국문화 적응 등 더 많

은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이들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교육의 필요성도 주문하였다. 다문화교육의 궁극적 목표는 다문화학생들이 제주도민으로 당당히 성장해서 우리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있다고 강조하며 기관 운영에 따른 애로 및 건의사항 등이 있는지에 대해 묻고, 함께 대안을 찾아보자고 직원들을 격려하는 것 또한 잊지 않았다.

또한, 교육위원회는 민선 6기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추진 중인 제주시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도 방문하여 기관 운영 현황을 청취하였다. 현재 도청에서 자기주도학습센터의 운영을 주관하고 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도교육청과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도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육정책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위원회 강성균 위원장은“모든 교육 정책은 우리 아이들의 미래와 관련된 것이므로 체계적인 계획 수립을 통해 소기의 목표를 달성하기 바란다”고 강조하며 향후 지속적인 교육현장 방문을 통해 애로사항 및 문제점 등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의정활동에 세심하게 반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학교 교육환경, 공항소음에 안전한가

학교의 교육환경이 공항소음으로부터 안전한지를 진단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김항국 부의장은 3월 15일 도민의 방에서 도교육청 관계자를 비롯 지역 주민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항소음의 피해를 겪는 학교의 교육환경을 개선하여 학생의 학습권 보장 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민 지원사업이 시행되고 있지만, 실제로 공항소음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소재하는 학교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향후 공항소음 피해학교 지원에 대한 조례 제정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간담회를 주관하는 김항국 의원은 “법에 의한 소음대책 지역의 학교에는 방음시설이나 냉방시설과 전기료 등이 지원되고 있지만, 문제는 소음대책 지역에 포함되지 않고 있지만, 공항소음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학교의 경우 여름철이 되면 문도 제대로 열지 못할 정도로 학습 환경이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비행기가 이륙할 때의 소음으로 인하여 학습의 집중도를 떨어뜨리고 장기적으로는 지속해서 같은 소음에 노출됨으로써 성인이 되었을 때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대책 마련의 시급성을 피력했다.





# 입법정보



## 법령 제·개정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어업 분야의 경우 농업·축산업분야 계약서로 사용하고 계약당사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화함

고용노동부령 제181호, 2017.2.28., 일부개정 시행 2017.5.1.

###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성어기 및 휴어기가 있는 어업 분야의 경우 농번기 및 농한기가 있는 농업·축산업 분야와 근로조건이 유사한 점을 고려하여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고용허가를 받은 사용자가 해당 외국인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사용하여야 할 표준근로계약서를 기존의 제조업 등에 사용되는 표준근로계약서 대신 농업·축산업 분야에 사용되는 표준근로계약서로 사용하도록 하는 한편, 표준근로계약서의 내용을 계약당사자가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외국교육기관이 국내 학력이 인정되는 외국교육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하여 운영하여야 하는 교육과정의 사회 교과에 포함되는 교과를 초등학교 1학년 및 2학년의 경우 슬기로운 생활로 한정하는 대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회 관련 교과로 변경

대통령령 제27928호, 2017.3.8., 일부개정 시행 2017.3.8.

###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이 국내 학력이 인정되는 외국교육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하여 운영하여야 하는 교육과정의 사회 교과에 포함되는 교과를 초등학교 1학년 및 2학년의 경우 슬기로운 생활로 한정하는 대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회 관련 교과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입법예고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해수욕장 이용객에 대한 정당한 자기소유 피서용품 방해 금지 규정의 위반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

공고 2017. 3. 2. (국토교통부장관)

### ◆ 개정이유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해수욕장 피서용품 대여 영업자의 해수욕장 이용객에 대한 정당한 자기소유 피서용품 방해 금지 규정의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하려는 것임.

### ◆ 주요내용

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규정 개정에 따른 조직변경사항 반영(안 제9조제1호, 제23조 제1항) 나.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별표 4)

| 위 반 행 위                                                                                            | 근거법조문      | 과태료 금액(만원) |      |      |
|----------------------------------------------------------------------------------------------------|------------|------------|------|------|
|                                                                                                    |            | 1회위반       | 2회위반 | 3회위반 |
| 나. 법 제22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br>2) 법 제22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허가구역 외 구역에서 해수욕장 이용객의 자기 소유 피서용품의 정당한 설치나 이용을 방해한 경우 | 법 제47조 제3항 | 10         | 10   | 10   |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소음대책사업의 냉방시설 전기료 일부지원 기간을 확대하고, 소음  
대책사업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항 신설

공고 2017. 3. 2. (국토교통부장관)

### ◆ 개정이유

- 소음대책사업의 냉방시설 전기료 일부지원 기간을 확대하고,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주민번호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가 현행 법령에서 법률·시행령으로 개정(시행 '17.3.30) 됨에 따라 소음대책사업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항 신설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4537호, 2017. 1. 17. 공포, 2017. 7. 18. 시행)됨에 따라 주민지원사업의 종류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 주요내용

가. 소음대책사업 냉방시설 전기료 일부지원기간을 하절기 3개월에서 4개월로 확대(안 제3조제1항 제5호)

나. 소음대책사업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처리 조항을 신설(안 제3조의2 신설)  
다. 주민지원사업의 종류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기준을 마련함(안 제12조 제2항 신설).

## 국회 의안 정보

### □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

- 발 의 일 : 2017. 02. 03. • 회 부 일 : 2017. 02. 06.
- 의 결 일 : 2017. 03. 02.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 제안이유

현행법은 공유토지를 간편하게 분할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토지소유권행사의 편의를 도모하고, 「주택법」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제35조제1항제4호에 따라 설치된 시설 중 「유아교육법」 제7조제3호에 따라 설치된 공동주택 단지 내 전국 1,200여개의 분할 대상 유치원 및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7호에 따라 설치된 시설의 경우 노후화 및 환경개선 및 참신한 현장교육은 물론 재산권 행사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난 2012년 5월에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음.

그러나, 법 시행기간 5년 동안 공동주택 단지 내 전국 1,200여개의 분할 대상 유치원 중 38개의 유치원만 분할을 하였고, 대다수의 유치원이 분할신청을 하였으나 현행법이 공동주택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지 않아 법 시행기간의 만료일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나머지 대다수 유치원과 어린이집들은 토지분할을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특례법 제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시행기간의 연장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임.

이에 현행법 시행기간을 연장하여 법 시행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고 관련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공동주택단지 내 복리시설 중 일반에게 분양된 복리시설에 대한 토지분할을 원활히 하여 소유자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유치원 및 어린이집의 운영과 교육시설 개선을 용이하게 하고자 함.

### ◆ 주요내용

이 법의 유효기간을 시행일로부터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여 2022년 5월 22일까지 유효하도록 함(법률 제11363호 부칙 제2조).

## 법령 해석

지목이 “대(垸)”인 토지가 녹지의 결정으로 맹지(盲地)가 된 경우, 녹지를 가로지르는 「건축법」상의 도로를 해당 토지의 진입도로로 설치하기 위하여 녹지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등(「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지침」 제4조제2항제2호 등 관련)

[법제처 17-0019, 2017.3.2, 국민안전처]

### 〈사례 예시〉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훈령 제562호를 말함. 이하 “점용허가지침”이라 함) 제4조제2항제2호에서는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에 대한 녹지점용허가 기준을 규정하면서,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에서는 「건축법」상 도로로 사용하기 위하여 점용하려는 경우에는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이면도로가 결정된 경우에만 도로개설 전까지의 기간으로 한정하여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호 자목에서는 녹지의 결정으로 인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간정보관리법”이라 함)에 따른 지목이 대(垸)인 토지가 맹지(盲地)가 된 경우 토지의 현지어건을 고려하여 이면도로를 계획한 후 점용허가를 하거나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도시공원법 시행령”이라 함) 제22조제3호에 따라 도로[국도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사도법」의 규정에 따른 도로를 말함(점용허가지침 제4조제2항제2호다목 참조). 이하 같음]로 점용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가. 지목이 대인 A토지가 녹지의 결정으로 인하여 맹지가 되었고, A토지와 인근 도로 사이에 녹지를 가로질러 「건축법」상의 도로로 사용하기 위한 진입도로를 설치하려는 경우,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이면도로가 결정되지 않았더라도 점용허가지침 제4조제2항제2호자목에 따라 녹지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지?

나. 질의 가에 따른 진입도로가 설치된 경우, A토지와 접해 있고 지목이 임야이며 맹지인 B토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사람이 질의 가에 따른 진입도로를 B토지의 출입도로로 사용하려는 경우, 질의 가에 따른 녹지점용허가와 구별되는 별도의 녹지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 위 사례는 이해를 돕기 위해 가공한 내용입니다.

### 【해석 결과】

####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지목이 대인 A토지가 녹지의 결정으로 인하여 맹지가 되었고, A토지와 인근 도로 사이에 녹지를 가로질러 「건축법」상의 도로로 사용하기 위한 진입도로를 설치하려는 경우,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이면도로가 결정되지 않았더라도 점용허가지침 제4조제2항제2호자목에 따라 녹지점용허가를 할 수 있습니다.

####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질의 가에 따른 진입도로가 설치된 경우, A토지와 접해 있고 지목이 임야이며 맹지인 B토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사람이 질의 가에 따른 진입도로를 B토지의 출입도로로 사용하려는 경우, 질의 가에 따른 녹지점용허가와 구별되는 별도의 녹지점용허가를 받아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 【이 유】

#### 가. 질의 가 및 질의 나의 공통사항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이하 “도시공원법”이라 함) 제38조제1항제1호에서는 녹지에서 녹지의 조성에 필요한 시설 외의 시설·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녹지를 관리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이하 “시장 또는 군수”라 함)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점용허가를 받아 녹지를 점용할 수 있는 대상 및 점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공원법 시행령 제43조제3호에서는 도시공원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녹지점용허가의 대상으로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의 설치”를 규정하고 있고, 도시공원법 시행령 제44조제1호 본문에서는 도시공원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녹지의 점용허가 기준으로서 “녹지의 설치 및 관리에 지장이 없을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점용허가지침 제4조제2항제2호에서는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에 대한 점용허가 기준을 규정하면서,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에서는 「건축법」상 도로로 사용하기 위하여 점용하려는 경우에는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이면도로가 결정된 경우에만 도로개설 전까지의 기간으로 한정하여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호 자목에서는 녹지의 결정으로 인하여 공간정보관리법에 따른 지목이 대토지가 맹지 가 된 경우에는 토지의 현지여건을 고려하여 이면도로를 계획한 후 점용허가를 하거나 도시공원법 시행령 제22조제3호에 따라 도로로 점용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건축법」 제44조제1항제1호에서는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는 제외함. 이하 같음)에 접하여야 하나,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질의 가에 대하여

이 사안은 지목이 대인 A토지가 녹지의 결정으로 인하여 맹지가 되었고, A토지와 인근 도로 사이에 녹지를 가로질러 「건축법」상의 도로로 사용하기 위한 진입도로를 설치하려는 경우,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이면도로가 결정되지 않았더라도 점용허가지침 제4조제2항제2호자목에 따라 녹지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까.

먼저, 도시공원법 제36조제1항에서는 녹지는 시장 또는 군수가 설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도시공원법 시행규칙”이라 함) 제18조제3항에서는 녹지 설치시에는 녹지로 인하여 기존의 도로가 차단되어 통행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기존의 도로와 연결되는 이면도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녹지의 설치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할 때에는 이면도로의 설치계획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법제처 2010. 1. 22. 회신 09-0411 해석례 참조).

그리고, 점용허가지침 제4조제2항제2호자목 및 나목에서는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를 설치하여 「건축법」상의 도로로 사용하기 위하여 녹지를 점용하려는 경우에는 녹지점용허가를 할 수 없으나, 이면도로가 이미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이면도로 개설 전까지만 녹지점용허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녹지를 설치하는 목적이 도시지역에서 자연환경을 보전하거나 개선하고 공해나 재해를 방지함으로써 도시경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므로(도시공원법 제2조제5호 참조), 녹지 주변 토지에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녹지를 가로지르는 도로를 설치함으로써 공해를 야기하거나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시공원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에 따른 이면도로가 개설될 것이 예정된 경우로 한정하여 그 이면도로가 개설될 때까지만 임시로 녹지를 점용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한편, 점용허가지침 제4조제2항제2호자목에서는 녹지의 설치로 인하여 지목이 대인 토지가 맹지가 된 때에는 이면도로를 계획한 경우 뿐만 아니라 이면도로를 계획하지 않은 경우라도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를 설치하기 위하여 녹지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시장 또는 군수가 도시공원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에 따라 이면도로 등을 설치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해당 토지소유자가 그 지목에 따라 정상적으로 토지를 사용할 수 없게 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녹지를 가로질러 진입도로를 설치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으로서, 점용허가지침 제4조제2항제2호자목 및 나목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점용허가지침 제4조제2항제2호자목에 따른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이면도로가 개설되지 않더라도 녹지점용허가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만일 이와 달리 해석할 경우 녹지의 설치로 인하여 지목이 대인 토지가 맹지가 되었다라도 시장 또는 군수가 이면도로를 개설하지 않을 경우 해당 토지소유자는 「건축법」상의 도로로 사용하기 위하여 녹지를 가로질러 진입도로를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는데, 이는 공익 목적을 위하여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에 과도한 제한을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지목이 대인 A토지가 녹지의 결정으로 인하여 맹지가 되었고, A토지와 인근 도로 사이에 녹지를 가로질러 「건축법」상의 도로로 사용하기 위한 진입도로를 설치하려는 경우,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이면도로가 결정되지 않았더라도 점용허가지침 제4조제2항제2호자목에 따라 녹지점용허가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 질의 나에 대하여

이 사안은 질의 가에 따른 진입도로가 설치된 경우, A토지와 접해 있고 지목이 임야이며 맹지인 B토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사람이 질의 가에 따른 진입도로를 B토지의 출입로로 사용하려는 경우, 질의 가에 따른 녹지점용허가와 구별되는 별도의 녹지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까.

먼저, 도시공원법 제38조제1항제1호에서는 녹지에서 녹지의 조성에 필요한 시설 외의 시설·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녹지를 관할하는 시장 또는 군수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미 설치된 A토지 진입도로를 단순히 B토지 건축물의 출입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녹지에 시설·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녹지점용허가 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청주지방법원 2007. 7. 11. 선고 2006구합1611 판결례, 서울고등법원 2006. 5. 3. 선고 2005누24249 판결례 참조).

한편, 「건축법」 제44조제1항에 따르면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건축대상 토지의 일정 면적 이상이 도로에 닿아 있거나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경우이어야 하고, 이러한 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질의 가에 따른 진입도로를 사용한다면, 이는 B토지상에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별도의 진입도로를 설치하는 것과 다를 바 없으므로 B토지 건축주는 B토지상의 건축을 위하여 별도의 녹지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공원법 제53조제2호에서는 같은 법 제38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받은 내용을 위반하여 녹지에서 금지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제38조제1항은 벌칙의 부과대상이 되는 행위의 구성요건에 관한 규정으로 볼 수 있고, 이러한 벌칙이나 과태료와 같은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여서는 안 될 것인바(대법원 2008. 2. 28. 2007두13791 판결례 참조), 같은 법 제38조제1항제1호의 문언상 녹지에 일정한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를 녹지점용허가의 대상으로 규정하였다면, 이를 녹지에 이미 설치된 일정한 시설을 “사용”하는 행위까지도 해당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녹지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유추 또는 확대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A토지와 접해 있고 지목이 임야이며 맹지인 B토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사람이 질의 가에 따른 진입도로를 B토지의 출입로로 사용하려는 경우, 질의 가에 따른 녹지점용허가와 구별되는 별도의 녹지점용허가를 받아야 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의견

이 사안은 행정규칙 해석 및 집행기준에 대한 의견 제시 안건에 해당합니다.  
○ 점용허가지침 제4조제2항제2호자목에서는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를 「건축법」상의 도로

로 사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하고 있고, 같은 호 나목에서는 이면도로 개설이 계획된 경우에만 같은 호 가목에도 불구하고 녹지점용 허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녹지에 접해 있는 토지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에 대하여 재산권의 행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 될 수 있으므로 행정규칙이 아닌 법령에 제한 근거를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도시공원법 시행령 제22조제3호에서는 도시공원점용허가의 대상이 되는 설치 시설의 종류로서 “도로”를 규정하면서 그 의미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고, 점용허가지침 제4조제2항제2호다목에서는 괄호 규정을 두어 도시공원법 시행령 제22조제3호에 따른 도로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사도법」의 규정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점용허가의 대상이 되는 설치 시설의 종류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므로 행정규칙이 아닌 법령에서 규정해야 할 것이므로, 점용허가지침 제4조제2항제2호다목 괄호의 내용을 도시공원법 시행령 제22조제3호로 이동하여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점용허가지침 제4조제2항제2호자목의 내용은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특칙으로 보아는바, 같은 호 자목을 정비하여 녹지의 설치로 인하여 지목이 대인 토지가 맹지가 된 경우에는 같은 호 가목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 자목에 따라 진입도로를 설치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자료

행정자치부

학교에 주민등록등·초본 제출하는 불편함이 해소된다  
- 학교의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학생 주민정보 직접 확인 -

- 학생이나 학부모는 더 이상 학교에 주민등록등·초본과 외국인등록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 교육부와 행정자치부는 올해 신학기부터 일선 학교가 학생들의 주민등록등·초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등의 정보를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그동안 일부 학교는 학교생활기록부의 인적사항 확인 및 정정, 전입학 등 학생들의 주소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학생들에게 주민등록등·초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등을 제출하도록 하였다.
  - 이에 학생이나 학부모는 인근 주민센터 등 관공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민원24 등을 이용하여 관련 서류를 발급받아 학교에 제출하고, 학교는 일일이 학생들로부터 취합하는 불편을 겪었다.
  - 교육부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행정자치부와 협력하여 학교의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정정, 전입학 등의 업무에 주민등록 등·초본, 외국인등록사실 증명 등의 행정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따라서 담당교사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으로 학생 관련 정보를 직접 열람 확인하여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되어 학부모의 불편을 해소하고, 또한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등 관공서 서류발급 업무 부담도 크게 줄어들게 된다.
- 윤종인 행정자치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학부모나 학생들이 일일이 주민센터 등을 찾아 주민등록등·초본을 발급받아 학교에 제출하는 불편함이 없어지고, 현장 교사와 주민센터 민원담당자도 업무 부담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3.0 공유서비스를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 전자계약만 잘 이용해도 최대 650만원 절감  
은행 방문 없이도 대출금액 조회, 담보대출 신청 및 등기 통합처리  
- 4월부터 광역시·경기도 및 세종특별자치시로 전자계약 확대 시행

- 부동산 임대차·매매거래에 국토교통부가 구축한 전자계약시스템과 연계한 은행 모바일뱅킹을 이용하면 현재 종이 계약서를 작성할 때보다 최대 0.3%p 저렴한 대출금리와 편리한 금융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 \* 부동산전자계약은 기존의 부동산거래절차와 동일하며 ‘종이로 작성하던 거래계약서만 컴퓨터, 태블릿PC, 스마트폰 등을 사용하여 작성하는 것’으로, 이 경우 온라인 네트워크를 통해 실거래 신고 및 확정일자가 자동 처리되므로 별도로 주민 센터 방문 등을 할 필요가 없음
-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4월부터 부동산 전자계약을 광역시·경기도 및 세종특별자치시로 본격 확대 시행을 계기로 전자계약과 부산은행, 경남은행의 모바일뱅킹을 결합한 금융상품 출시에 합의하고 3.14(화) 부산에서 해당 금융기관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 \* ‘17.4월 광역시·경기도 및 세종특별자치시 → ’17.7~8 전국
  - 해당 은행의 고객이 부동산 전자계약 및 모바일 뱅킹을 이용하여 1억 7천만 원을 1년 거치 19년 원리균등분할상환 방식의 주택자금대출(잔금)을 신청한다고 가정하면 최대 0.3%p\* 대출금리가 인하돼 약 650만 원의 대출이자 절감 혜택을 보게 된다.
  - \* 전자계약 0.1%p + 모바일 대출신청 0.2%p
  - 또한, 부산은행, 경남은행과 협약한 공인중개사에게는 대출금액의 최대 0.22%에 해당하는 수수료가 제공된다.
  - 이제까지 주택자금대출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을 수차례 직접 방문하여 대출가능여부를 상담하고 대출 약정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많은 시간과 까다로운 절차로 마음을 졸였으나, 부동산 전자계약과 모바일뱅킹을 함께 이용하면 전국 어디서나 은행 방문 없이 대출 약정계약서를 작성한 후, 약정일자에 필요한 자금을 받아서 해당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와 설정등기도 한번에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는 장점을 누릴 수 있다.
  - 이렇듯 금융기관의 우대금리 혜택이 가능하게 된 것은 전자계약으로 인건비 등 고정비용이 절감되고 거래당사자 쌍방의 신분확인 및 계약서의 진본성이 확보됨에 따라 금융대출사고 위험이 낮아져 그 절감비용을 고객에게 돌려줄 수 있기 때문이다.
  - 한편, 종전에 대출금리를 0.2%p 인하해 주는 KB국민·우리·신한은행에 추가하여 부산은행, 경남은행이 동참하고, 조만간 모 금융기관도 참여의사를 밝히고 있어 전자계약을 이용하면 국민들의 거래부담은 다소나마 줄어들 것으로 본다.
- 이날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하여 인터넷 전문은행, P2P금융 업체와도 협력부문을 적극 발굴해 신산업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 도민불편 제도 직접 찾아 개선하는 소통 의정 구현

### 3월 찾아가는 이동 상담소 운영, 추자도 29일, 우도 30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생활현장을 찾아서 도민들이 겪고 있는 제도적 불편사항을 듣고 도의회 차원에서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하는 '찾아가는 이동 상담소'가 3월 29일 추자도를, 30일에는 우도를 방문해 마련됐다.

'찾아가는 이동 상담소' 운영은 변호사 및 세무사, 부동산 전문가, 도의회 정책자문위원 등으로 상담반을 편성하고, 지역 현안과 계층별 고충에 대한 사전 의견수렴과 함께 월 1회 2개소 정도를 직접 방문하여 1:1 현장 상담을 통해 도민 애로사항 청취와 해소에 주력하게 된다.

특히 ▲도민들이 일상에서 느끼는 숨은 불편을 찾아내어 입법 제도개선 과제 발굴 ▲발굴한 법제정비사항 등에 대한 입법화 추진(법령정비사항 → 제도개선과제, 조례정

비사항 → 자치법규 개정) ▲도민이 평소 생활하는데 궁금한 사항 등 각종 상담 ▲지역별, 업종별, 계층별 관심사항 의견수렴 등의 활동을 펼치게 된다.

3월 29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추자면 주민자치센터회의실에서, 3월 30일에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우도면 주민자치센터 회의실에서 상담이 이루어졌으며,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긍정적인 반응을 끌어냈다.

이 밖에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는 직접 상담을 받지 못하는 도민의 경우 도의회 홈페이지 내 개설 운영 중인 '자치입법 제안센터'를 이용하여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사항 등 많은 제안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 도의회, 부소오름에 편백을 입히다



이른 화초를 파종하는 시기이자 농사의 시작인 애벌 갈이를 하는 춘분을 사흘 앞둔 3월 17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신관홍 의장과 김황국, 윤준광 부의장, 김태석 운영위원장, 이상봉, 안창남, 김광수 의원을 필두로 정대근 사무처장과 직원 70여 명이 나무 심기에 참가, 조천읍 부소오름에 편백을 입혔다.

오전 9시 도의회를 출발한 나무 심기 팀은 30분 후 부소오름에 도착, 신관홍 의장의 인사 말씀과 간단한 나무 심기 요령을 청취한 후 본격적인 식재에 돌입했다.

이 날 제72회 식목일을 기념하여 도의회 나무 심기 팀이 심은 나무는 5년생 편백 500본.

앞으로 2~30년 후 편백 숲이 된 후 다시 찾아와 힐링하겠다는 다짐 속에 나무 심기는 끝이 났다.

도의회는 앞으로도 우리 후손들이 이어받을 푸른 숲을 보존하기 위해 범도민 나무 심기 분위기를 확산시켜 제주의 자산인 청정환경을 지켜나갈 계획이다.

## 가만히 앉아서 얻을 것은 하나도 없다

### 제3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옴부즈맨 분과별 현장 방문 활발

가만히 앉아서 얻을 것은 하나도 없다.

제3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옴부즈맨 문화관광 분과가 현장을 직접 찾아 나섰다.

이봉언 분과장과 분과위원 8명은 30일 오전 10시부터 도의회 회의실에서 자체회의를 가지고 활동상황 보고회 준비에 따른 제반사항 등에 대해 논의한 후 현장을 찾아 나섰다.



시민감시관의 눈으로 직접 보고 현장을 파악하여 건의할 사항, 시정할 사항 등을 직접 챙기겠다는 것.

옴부즈맨 문화관광 분과위원들이 찾은 현장은 방선문 계곡과 성산일출봉, 해녀박물관으로 환경정비 봉사활동을 펼치며 문제점은 없는지를 점검했다.

이보다 앞서 제3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옴부즈맨 안전복지 분과 홍창부 분과장과 소속 옴부즈맨 8명도 3월 29일 서부소방서와 성이시돌요양원을 방문하여 시설을 견학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는가 하면 봉사활동도 전개했다.

안전복지분과 옴부즈맨들은 또 현장활동과 함께 활동상황 보고회 준비에 따른 제반사항 등에 대해 논의했다.



## 청탁금지법 Q&A



우리 생활 속 청탁금지법 위반사례를 알아봅니다.

**Q:** 미리 취업한 대학생이 교수에게 “F학점만 주지 말아달라”고 사정한다면?

**A:** 졸업 예정자 신분으로 4학년 2학기에 취업한 뒤 출석일수를 채우지 못해 대학생들이 교수들에게 사정하는 경우가 자주 있다. F학점을 받으면 졸업을 할 수도 없고, 자연히 취업 또한 취소될 수 있다. 김영란법 시행 후 국·공립대는 물론 사립대 교수도 김영란법상 ‘공직자 등’에 해당하기 때문에 교수에게 법령이 허용하는 재량권이 없는데도 이런 부탁을 했다면 부정청탁이 된다.

이 사례에서는 학내 규정이 부정청탁 여부를 판가름하는 기준이 된다. 대부분의 대학교에는 ‘총 수업시간 수의 3분의 2 이상을 채우지 못한 학생은 시험을 볼 수 없다’는 규정이 있다. 시험을 보지 못하면 학점은 자연히 F를 받게 된다. 이런 규정이 있으면 교수의 재량권이 없다고 봐야 하므로 부정청탁에 해당한다.

취업이 결석의 사유로 인정되는 학교나 학과에서는 교수 재량으로 시험을 허용하거나 다른 과제로 시험을 대체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 교수 재량권 내에 있는 사항에 대해 부탁을 했으므로 부정청탁이 아니라고 볼 수 있다. 같은 대학생인데도 학교 규정에 따라 부정청탁 여부가 갈린다는 의미다.

다만 김영란법은 본인의 이익에 관해 청탁한 사람에 대해서는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학생은 처벌받지 않는다. 그러나 교수는 재량권 범위를 벗어나 성적 을 올려주게 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